

企劃特輯解說

國際通商과 知的所有權 保護

I. 工業所有權 出願動向

1. 權利別

(單位: 件)				
權利	年度	'85	'86	'87
				年平均 增加率 (%)
特許		10,587	12,759	17,062
實用新案		18,548	22,401	24,773
意匠		18,949	18,731	20,231
商標		26,069	28,031	30,762
計		74,153	81,922	92,828

이 글은 지난 11월 25일 오전 8시 라마다 브네
상스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本會가 主催한 特許
廳長 초청 朝餐懇談會에서 있는 朴弘植특허청장
이 發表한 內容이다.

朴청장은 이날 약 40여분에 걸쳐 「國際通商과
知的所有權 保護」에 대해 說明했다.
主要內容을 要點 및 圖表 위주로 紹介한다.

〈編輯者 註〉

2. 內・外國人別

(單位: 件)

權利	年度		'85	'86	'87	年平均 增加率 (%)
	特許	實用新案	內國人	外國人	內國人	外國人
特許			2,703 (25.5)	3,641 (28.5)	4,871 (28.6)	34.3
實用新案			7,884 (74.5)	9,118 (71.5)	12,191 (71.4)	24.7
計			20,318 (69.7)	25,075 (71.3)	28,555 (68.3)	18.7
			8,817 (30.3)	10,085 (18.7)	13,280 (31.7)	23.1

* () 内 數字는 構成比임.

3. 主要 產業部門別

(單位: 件)

部門別	機械	化學	一般	織維	電信	氣	土建	木設	採金	鑄屬	飲衛	料生	事用	務品	殖產	機具	雜貨	計
年度別																		
'85	7,244 (24.8)	3,068 (10.5)	1,015 (3.5)	8,854 (30.4)	1,702 (5.8)	887 (3.0)	1,387 (4.8)	657 (2.2)	954 (3.3)	3,387 (11.6)	29,135 (100.0)							
'86	8,116 (23.1)	3,861 (11.0)	1,125 (3.2)	12,960 (36.9)	1,515 (4.3)	871 (2.5)	1,705 (4.5)	649 (1.8)	911 (2.6)	3,582 (10.1)	35,150 (100.0)							
'87	9,761 (23.3)	4,843 (11.6)	1,409 (3.4)	15,842 (37.9)	1,757 (4.2)	1,012 (2.4)	1,907 (4.6)	906 (2.2)	971 (2.3)	3,427 (8.2)	41,835 (100.0)							
87/85 增加率	135	158	139	179	103	114	137	138	102	101	144							

* 1. 特許와 實用新案을 합친 出願實績임.

2. () 内 숫자는 構成比임.

目 次



朴 弘 植
〈特許廳長〉

- I. 工業所有權 出願動向
- II. 通商에 있어서 知的所有權 問題
- III. 美國의 知的所有權 保護強化와
國際通商
- IV. 通商에 있어서 知的所有權 保護
에 대한 우리의 立場
- V. 우리企業의 對應 및 知的所有權
管理戰略

〈이번號에 全載〉

II. 通商에 있어서 知的所有權 問題

1. 沿革

- 가. 兩國間 通商協定時 附隨條項(1870~1883年)
- 나. 巴黎協約의 成立(1883年)
- 다. 韓·美 友好通商 및 航海條約 第10條(1956年)
 - 兩國의 國民과 企業은 相對國의 領域內에서 特許權의 取得 및 保有, 商標, 營業用의 名稱等에 관한 權利와 모든 種類의 工業所有權에 關하여 內國民待遇와 最惠國民待遇를 받음.

2. GATT의 動向

- 가. 現行 知的所有權 關聯規程
 - GATT規程 第20條(一般的例外)
 - 特許權, 商標權 및 著作權의 保護 및 기만적 판행의 防止等을 위한 措置를 採擇하거나 實施할 수 있음.
- 나. GATT/UR協商
 - 1) 推進 經緯
 - 78.7 : 美國의 發案으로 偽造商品交易에 관한 內容을 Tokyo Round交涉代表團 共同署명에 包含
 - 83.11 : 第39次 GATT總會에서 偽造商品交易 問題를 GATT體制內에서 다를 수 있도록 檢討議題 設定
 - 86.9 : GATT/UR總會 閣僚宣言文에서 貿易關聯

知的所有權(偽造商品交易 包含)分野를 協商
議題로 探擇

87.3 : 第1次 知的所有權 協商 그룹會議 開催以
後 88.10月 10次 會議 開催

2) 協議對象

-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 侧面
- 偽造商品 交易
- 關聯 國際機構との 關係
- 協商節次 및 方法

3) 現在 推進狀況

- 第10次 U/R 知的所有權 그룹會議 開催(88. 10.17~21)

會議 結果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側面)

- 美國 提案은 包括의인 保護基準의 必要性 및 施行節次 및 紛爭解決節次의 重要性 強調
- 日本은 同 協定에 (1) 包括의인 協定의 締結 (2) 完全한 保護基準의 設定 (3) 協議와 紛爭解決의 위한 國際機構의 設立檢討, (4) 開途國에 對한 技術援助, 유예기간 認定檢討等이 反映되기를 希望

- 開途國은 知的所有權 保護는 巴黎協定으로도 充分하며 閣僚宣言文의 委任範圍가 擴大 되어서는 안된다고 主張

(偽造商品 交易)

- 美國은 偽造商品交易 問題도 知的所有權에 대한 包括의인 協定의 一部라고 強調하고 國境措置를 包含한 施行節次等 實質問題檢

討希望

- 日本은 偽造商品交易 問題를 登錄商標에 限定할것이 아니라 넓은 概念으로 分析해야 하며 保護節次는 단순히 國境에서 뿐만 아니라 國內措置도 同時に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함.
- 우리나라는 保護措置의 客觀性 確保를 為해 登錄商標와 같이 登錄된 知的所有權을 對象으로 通商範圍를 限定하고 偽造의 舉證責任을 權利所有者가 져야되며 고소인의 公탁금 制度와 같은 保護는 물론 虛偽고발의 경우 보상제도등도 같이考慮되어야 한다고 함.

(他 國際機構活動과의 關係)

- 先進國들은 知的所有權 關聯 他 國際規範
○ 履行上 效率성이 未治하다는 理由로 GATT의 權能을 補完 擴大 主張
- 開途國들은 協商指針이 GATT關聯條項의 確認에 있음을 理由로 反對하고 있음.

3. WIPO動向

가. 特許法 統一化(Harmonization) 條約 推進

1) 推進 方向

- 特許法 規定 統一化를 為한 國際條約 締結 推進('85~'88, 5次會議)
- 特許法의 主要部門에 關하여 各國의 國內法 이 規定할 수 있는範圍를 制限함으로써 國際的 統一化 圖謀

2) 主要 内容

- 特許出願의 形式的 要件
- 特許許與 要件
- 特許權
— 製法特許 保護擴大, 存續期間, 特許許與 對象
- 其他 行政規定等

나. 集積回路(Integrated Circuits) 保護條約 締結 推進

- 保護對象: 半導體 칩 設計(IC layout-design)
- 保護期間: 10年
- 同 條約締結의 結論을 위한 Washington外交會議 開催 諸定(89.5月中)

다. 生命工學(Biotechnology) 發明保護 推進

- 生命工學 發明保護를 為한 專門家會議 開催 (84.11.~88.10)

- 會議內容: 生命工學發明의 保護原則 및 保護方法

III. 美國의 知的所有權

保護強化와 國際通商

1. 美國의 知的所有權 保護動向

가. 政策 基本方向

- 1) 從來 自由貿易主義→公正貿易主義 표방
- 2) 知的所有權의 不充分한 保護를公正貿易의 重

大なる 障碍要因으로 規定

- 美 行政政府의 海外 知的所有權 保護를 위한 特別聲明 發表(88.4.3)

— 保護對象의 知的所有權 形態

特許權, 意匠權, 商標權, 商品來來上의 表示(Trade Dress), 營業秘訣(Trade-Secret) 및 新技術 出願에 따른 形態(Computer Software, 半導體 Mask Work, 衛星通信, 有線 TV 등)

- 3) 國內의 知的所有權 保護強化 計劃

- '87.2, 레이건 美大統領의 競爭力 強化計劃의 一環으로 發表
- '87.8, 21世紀 美國의 戰略產業—超傳導體指定 育成計劃中 特許保護의 強化 優先審查制度 採擇 등 提示

나. 美 綜合貿易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 1) '74 通商法 301條(現行)

가) 概 要

'74 通商法 第3編 第1章(通商法 301條)은 國際貿易協定下에서 美國의 權利를 行使하는 데 있어서 또는 特定의 不公正한 貿易慣行에 대해서 大統領이 취할 수 있는措置內容 規定

나) 節 次

○ 措置內容

- 貿易協定과 不一致 또는 미국의 權利를 否認할 경우
- 貿易協定과 關係敘이 美國通商(Commerce)에 不當(UnJustifiable), 不合理(Unreasonable) 및 差別的(Discriminatory)하거나 또는 負擔을 주는 外國의 法律, 政策 및 貿易慣行
- 措置範圍
— 當該國家 또는 一律의 으로

- 當該品目이나 部門(Service 包含) 또는 이와 關係있어
- 措置內容
 - 貿易協定上의 利益停止, 撤回
 - 特別關稅 賦課
 - 輸入 및 서비스의 制限등
- * 用語의 定義
 - 通商(Commerce)
 - 特定品目에 關聯與否를 考慮하고 國際交易에 關聯된 서비스(情報傳達 包含)
 - 商品 및 서비스交易과 關聯된 美國人의 外國投資
 - 부당(Unjustifiable)
 - 一般的으로 美國의 國際의인 權利를 해치거나 一致하지 않는 法律, 政策 및慣行을 意味함.
 - 尤其 内國民 또는 最惠國民待遇, 企業의 設立權, 知的所有權 保護을 否認하는 法律 · 政策 · 慣行
 - 不合理(Unreasonable)
 - 美國의 國際의인 權利를 반드시 위반하거나 不一致할 必要는 없으며 不公正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認定되는 것.
 - 이에 限定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있어서公正한 형평에 어긋나는 法律 · 政策 · 慣行을 意味함.
 - 市場接近에 關한 機會(市場의 開放)
 - 企業設立에 關한 機會(外國人 投資의 開放)
 - 公正하고 效果的인 知的所有權의 保護
- 2) '88 総合通商法
 - 가) 74 美通商法 301條 關聯 主要改正內容
 - 88.8.3 美議會通過
 - 88.8.23 美大統領裁可(實施日)
 - 調查開始 및 報復措置權限을 大統領에서 USTR로 移管
 - 報復措置時 政治的 考慮 可能性 배제
 - 報復措置의 義務化
 - 多者間 또는 雙務貿易協定의 違反 및 不當한 慣行(國際法上 美國權利 侵害)에 대해 USTR의 301條 報復措置 義務化
 - 不合理하고 差別의 慣行에 대한 報復措置는 USTR의 재량
 - 不合理한 貿易慣行의 具體的 명시
 - 輸出產業育成政策, 勞動權侵害, 相對國
 - 市場의 反競爭要因 助長 政策等에 대해서도 301條 發動 可能
 - 不公正貿易國家에 대한 調查 義務화
 - USTR은 각국의 關稅, 非關稅貿易障壁 및 그로 인한 美國貿易 投資上 損失로 確定, 每年 議會에 報告
 - * 知的所有權 保護拒否國家에 대한 301條 調查 및 報復措置를 美務化하는 規定을 新設
 - 나) 美 關稅法 337條(現行)
 - 1) 現行法規定
 - 〈概要〉
 - 不正競爭手段 및 不正行為에 依한 輸入이 美國의 產業에 實質적인 損害를 주거나 또는 考慮가 있는 경우에는 當該物品을 合衆國에 持込하는 것을排除할 수 있다. (*88.4.27 美上院에서 通過한 総合貿易法案에 產業被害立證要件 免除)
 - ① 不正行為: 不正入札, 著作權侵害, 輸出地虛偽表示, 虛偽商標使用, 特許權侵害, 商標權侵害等
 - ※ 現實의으로 提起되는 全體의 80以上이 特許權侵
 - ② 提訴: 利害關係者가 ITC(國際貿易委員會)에 提訴
 - ③ 調査開始決定: 提訴受理後 30日以內
 - ④ 通關禁止: 大統領은 當該物品의 通關禁止를 命令
 - 關稅法 337條에서는 通關을 禁止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美國內에 輸入된 物品의 販賣禁止 및 損害賠償 等의 民法의 救濟에 對하여는 離判所에 訴를 提起하여야 함.
 - 2) '88 総合通商法
 - 〈關稅法 337 主要改正內容〉
 - 美國產業에의 被害立證要件 削除
 - 不公正去來行爲 즉, 知的所有權 被害事實만으로도 輸入禁止措置外 可能
 - 規制內容의 強化
 - 不公正去來行爲 再發時 輸入禁止措置外에 該當商品의 암수 · 몰수 措置 可能
 - 輸入禁止措置違反에 대한 罰金限度를 일당 10,000 \$ 또는 物品의 美國內 國內價額中 多은 쪽으로 規定하였던 것을 일당 10,000 \$ 또는 物品의 國內價額의 2倍中 多은 쪽으로 增額

다. 其他 通商關聯法과 知的所有權

- 1) GSP延長法—開途國에 知的所有權 保護 誘導受惠開途國 指定期 및 競爭力 要求條件 適用 免除時 知的所有權(特許權, 商標權, 著作權等)의 保護程度에 따라 決定
- 2) 國際貿易投資法
各國의 特許權, 商標權, 著作權等 知的所有權 을 包含 市場開放障壁에 대한 分析 對策 報告
- 3) 高度技術 商品法
高度의 技術商品 및 關聯 서비스의 國際交易 및 投資에 關한 최대한의 市場開放目標: 知的所有權의 效果의 保護措置 包含

2. 美 綜合貿易法 施行의 影響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

- 1) 美國은 美國 產業構造의 高度化 및 소프트化와 製造業 分野의 國際競爭力 低下로 國際的 比較優位에 있는 知的所有權과 關聯이 많은 尖端技術商品 및 서비스業 分野를 美國 產業發展에 關心으로 認識
◦ 知的所有權 保護強化를 爲한 多者間 및 雙務的 貿易協商 推進努力
- 2) 最近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特許權・商標權 및 著作權等 知的所有權 侵害問題을 持續的으로 提起
◦ 우리나라의 知的所有權 保護制度 및 그 施行現況에 對한 美通商法 305條 調查 實施: USTR에 事實調查班 設置
— 設置日時: 88.6.13
— 調查範圍
 - 特許許與 過程에서의 差別의 與否
 - 特許侵害 訴訟에서의 法院의 適法性 與否
 - 特許侵害에 對한 裁制措置의 適正性 與否 등
- 따라서 우리나라 企業이 美 業界의 知的所有權 을 繼續 侵害하고 있다고 判斷되는 경우 301條 調查結果에 따라 報服措置 可能性濃厚
- 3) 最近 우리나라의 對美 尖端技術商品 輸出增大 趨勢에 따라 美業界의 知的所有權 保護에 對한 關心高潮
◦ '86年 以後 美業界의 輸入規制 提訴 總 17件中 337條 提訴가 9件 차지
◦ 過去에는 商標權 侵害提訴가 大部分이었으나 最近에는 特許(技術) 侵害 提訴 中心으로 關心 移動

- 4) 美 產業에의 被害立證 要件 削除로 小量輸出 品目에 대하여도 提訴가 增加할 展望

IV. 通商에 있어서 知的所有權 保護에 대한 우리의 立場

1. 一般的 立場

- 基本方向: 知的所有權 保護強化 및 國際化 推進:
 - 物質特許制度 導入(87.7.1 施行)
 - 微生物, DNA등 生命體 및 生命物質 特許許與 實施(87.7.1)
 - 特許期間 延長: 12年→15年(87.7.1)
 - 著作權法 改正: 保護期間 延長: 30年→50年
 - 世界著作權 協約(UCC) 및 國際音盤協約 加入(87.10)
 - 부다페스트條約(微生物 寄託을 爲한 國際條約) 加入(88.3.22)
 -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 制定 施行(87.7.1)
 - 偽造防止 活動 強化
 - 對外貿易法 改正(87.1.1)
 偽造商品 輸出入 行為 禁止條項 挿入

2. GATT/UR에서 우리의 立場

- 基本立場: GATT에서의 通商關聯 知的所有權 保護強化 基本原則 支持 및 積極參與
-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 側面
 - 知的所有權 協商은 國際貿易에 대한 直接的이고 重大한 障碍가 되는 事項에 局限
 - 그러한 障碍에 대한 措置가 새로운 貿易障壁이 되지 않도록 保護規範 마련
- 既存 國際協約(Paris協約, Berne協約, UCC)을 尊重하고 이를 補完하는데 局限
- 偽造商品 交易
 - 偽造商品 Code締結은 原則적으로 支持함.
 - 同 Code는 輸入國에서 合法적으로 有效하게 登錄된 商標의 偽造에 대한 輸入規制 措置에 限定되어야 함.
 - 해적행위에 대한 國際的規制措置의 必要性 認定

3. WIPO 動向에 대한 우리의 立場

- 가. 特許法 統一化(Harmonization) 條約締結 推進
 - 韓國立場: 特許法의 主要部門에 關한 國際的

統一化作業을 지원함.

韓國은 85.7부터 88.6, 同 專門家會議 繼續 參加하고 있음.

나. 集積回路(Integrated Circuits) 保護條約 締結推進

- 韓國立場: 同 條約 締結을 原則의 으로 支持함.
同 條約締結을 위한 專門家會議에 繼續 參加하고 있음.
同 條約加入 및 國內保護法制定을 時期, 方法등 繼續 檢討要

다. 生命工學(Biotechnology) 發明保護

- 韓國立場: 生命工學 發明保護 努力を 支持하며
同 專門家會議 繼續參加하고 있음.

V. 우리企業의 對應 및 知的所有權 管理 戰略

1. 우리企業의 對應策

가. 企業內 研究所 設置 擴大로 新製品開發 促進

- 企業內 研究所 設置와 과감한 R&D投資를 통해 新技術, 新物質 및 新製品 開發에 보다 많은努力 경주
- 우리나라 企業의 研究所 設置 現況

'81年 → '88.8現在
53個所 561個所

(大企業 53) (大企業 276
中小企業 285)

나. 企業內 知的所有權 管理機能 強化

- 競爭社의 既存 知的所有權 事前調査
 - 對美 輸出業體는 輸出하기 前에 미리 美競爭社의 Patent Portfolio등 知的所有權에 대한 調査를 實施함으로서 紛爭소지 事前 防止努力
- License契約 締結
 - 美業界의 知的所有權 侵害 主張時 정식 訴訟節次가 開始되기 전에 미리 接觸, 협상을 하여 화해(License締結등)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自社保有 特許權을 내세워 Cross-License契約締結 推進
- 美國, EC, 日本等 先進國에 自社의 開發技術 特許出願
 - 安定된 輸出市場의 確保와 輸出商品에 대한 知的所有權 紛爭豫防을 위한 최선의 方法은 輸出相對國에 特許出願을 통한 特許權

을 獲得하는 것임.

- 對開途國 商標權 保護措置 講究
- 商標權 保護과 偽造商品의 製造 및 輸出防止

2. 企業의 知的所有權 管理戰略

가. 特許專擔部署 設置 現況

業種	年度								計
	'77	'78	'79	'80	'81	'86	'87	'88	
綜合貿易		12	1	2		9	1		25
機械·金屬	45	19	6	1	40			5	116
電氣·電子	1	34	7	4		31	1	5	83
化工藥品	2	44	20	8	2	96		3	175
纖維·其他	2	40	8	7	3	80		4	144
計	5	113	55	27	6	256	2	17	543

나. 特許專擔部署의 機能 強化

1) 積極的 機能

- 特許網 地圖(Patent Map) 作成等으로 最高經營者를 補佐하여 技術의 目標 設定
- 開發된 技術의 出願·登錄 業務遂行
- 取得된 權利의 侵害防止, 改善點 發見, 直接使用, 移轉 또는 License等 方針決定等 事後管理(Maintenance, Feed back)

2) 防禦的 機能

- 特許網 地圖에 의해 特許無風地帶(技術分野 및 販賣地域등) 索出로 他社의 特許侵害 回避
- 競爭社의 特許取得 및 活用牽制, 異議申請, 無效審判 및 權利範圍 確認審判請求等

3) 技術情報 서비스 機能

- 技術開發, 生產, 販賣等 積極的 機能 및 防禦的 機能 遂行을 위한 特許網 指導作成 提供
- 其他 技術情報의 寶藏, 分析, 普及

다. 特許網 地圖(Patent Map)의 作成과 活用

Patent Map은 技術 細分野別로 自社 및 國内外 競爭社의 特許狀況(登錄, 出願中, 開發中等)을 表示한 特許網 地圖로서 企業의 技術政策(開發, 導入), 製品生產, 販賣計劃의 意思決定에 있어 重要情報 to 提供하는 것으로 企業은 새로운 技術의 發展, 他社의 特許狀況의 變化에 따라 Patent Map을 계속 補完發展시켜 이를 잘 活用해야 할 것임.

라. 企業의 特許管理 水準向上

- 企業의 特許管理 水準을 다음과 같이 規定할 수 있다.

Stage—0	管理不在로서企業方針이라든지企業目標와는關係없이出願하는“補償金별기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段階이다.
Stage—1	出願手續 및 侵害處理等事後業務에 쓰이고 있는段階로서 Afterservice型 또는充實命令에 服從하는兵士型이다.
Stage—2	研究開發에 대한情報Service라든지 liaison service를 하는段階로서 before service型 또는 사관형이다.
Stage—3	發明의評價, 誘導등을 하여積極的인 Service를 하는段階로서參謀型이라고도 할 수 있다.
Stage—4	經營 Needs를 선취하여自發的으로 調查를 實施하고, 他社의特許權의利用, 契約 및共同開發等을起案하고經營活動에積極的으로參加하여가는段階이다. 이段階를 Integration service 또는指揮官型이라고도 할 수 있는水準이다.

※ 資料：日本發明協會刊：特許管理評價システム

◦ 우리企業의 特許管理 水準向上

- 現在 Stage 0~2 水準을→Stage 3~4 水準으로 向上
- 特許專擔部署는 단순히 工業所有權出願·登錄業務代行에서 脫皮 Patent Map를作成, 最高經營陣 및 技術開發部署要員등 全社員에게 特許情報提供→技術開發 方向設定, 製品生產 및 販賣戰略樹立, 海外出願 및 技術導入時 有用性判斷基準 提供
- 특히 對美輸出時 知的所有權 侵害與否 事前調查 및 事後管理機能까지도 遂行. <※>

新刊案内

特許專擔部署 業務指針書

저자: 金允培 변리사
규격: 국판 320면
가격: 10,000원

工業所有權 지식

저자: 鄭泰連 변리사
규격: 4×6판·264면
가격: 2,300원

판매처: 韓國發明特許協會 자료판매센터

(案) 發明品企業化推進 審議委員會 運營

(内)

特許廳告示 第88-3호에 의거 本會는發明의企業化過程을 積極支援함으로써優秀發明의 사장화를 방지함과 동시에發明意慾을振作시켜 技術開發을 通한國家產業發展에 기여케 하기 위하여發明品企業化推進審議委員會를 아래와 같이運營하고 있으니發明人들의 많은活用바랍니다.

◎ 아 래 ◎

1. 目的

發明의企業化과정을 積極支援함으로써優秀發明의 사장화를 防止함과 동시에發明意慾을 진작시켜 技術開發을 通한國家產業development에 寄與함

2. 機能

- 1) 發明의企業化可能性 검토
- 2) 企業化支援機關(團體)과의 연계를 위한推薦
- 3) 發明需要業體와 연계를 위한 技術評價 및 實施斡旋

3. 支援對象

- 1) 特許法, 實用新案法에 의하여登錄되었거나出願중인發明 및 考案
- 2) 소별로된發明 및 考案

4. 申請節次

- 1) 所定의申請書작성에 의거 年中수시로申請接受함
- 2) 專門機關에 發明의 技術評價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費用은申請者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케 함

5. 評價方法

- 1) 技術性 및 關聯技術에의 과급효과
- 2) 市場性(시장규모, 타상품과의 대체성 등)
- 3) 製品의 추정예정가격 및 수지전망
- 4) 輸入代替 및 輸出展望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 (557-1077. 8)로 問議바랍니다.